

2020년 6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정책과 과 장 박정훈(044-201-2311), 사무관 문원탁(2317) 제공일: 6월 26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

- 적정사육두수, 약취관리 등 농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농식품부, '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' 발대식(6.25, 축산환경관리원)을 갖고, 6. 29.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 추진
 - 축산환경·가축방역·가축이력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환경관리원·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·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으로 도별 1개반씩 9개 반(27명)을 편성,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서 축산현장 점검 추진
 - ※ 축산법 제51조에 따라 가축의 질병, 위생관리,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의 점검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('18. 12. 31. 개정, '20. 1. 1. 시행),
 - 「축산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·장비 구비 여부,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통합 점검
- 축산 관련기관들은 우선 1개월간(6. 29.~7. 28.),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115 농가*(돼지 61농가, 젓소 54농가) 대상으로 가축사육밀도, 가축분뇨 적정처리, 허가 및 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 집중 점검 실시
 - * 축산업 허가정보(축사면적)와 축산물 이력정보(사육두수) 비교분석 및 지자체 현장확인을 거쳐, 축산법에 따른 적정 가축사육두수 초과로 확인된 농가
-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초과,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, 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개선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
- 축산관련기관들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축산현장 점검 본격 추진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2020. 6. 25. 축산환경관리원에서 ‘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’ 발대식을 갖고, 6. 29.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선다.
- 축산법 제51조 개정(18. 12. 31. 개정, '20. 1. 1. 시행)으로 축산업 허가·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 「축산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의 준수사항 등 점검 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
-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품질평가원(가축의 사육·이력관리)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가축방역), 축산환경관리원(축산 악취·환경 관리)을 축산농가의 지도·점검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.
- ‘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’은 축산물품질평가원·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·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9개 반(27명)을 편성,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되며,
- 축산 악취 민원 농가, 사육밀도 초과농가, 밀집사육 지역,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·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
- 「축산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시설·장비 구비,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고,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.
- 축산관련기관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개월 간(6. 29.~7. 28.),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(돼지 61농가, 젖소 54농가)를 대상으로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,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,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.

- 점검대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정보(축사면적)와 축산물 이력정보(사육두수)를 기반으로 파악된 가축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 대해,
 - 지자체 현장확인(1. 22~3. 31)을 거쳐, 4. 30.까지 초과사육 가축에 대한 처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가이다.
- 이번 점검 결과,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
-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축산악취,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,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, 전국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‘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’고 언급하면서,
-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, 축산악취 관리,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’이라고 밝혔다.

축산법

제28조(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, 가축질병의 예방,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5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축산법시행령

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② 법 제51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"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(이하 이 조에서 "축산물품질평가원"이라 한다)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 방역 지원본부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.

참고 2

발대식 사진



<사진설명>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2020. 6. 25. 축산 환경관리원에서 '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' 발대식을 갖고, 6. 29.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.